

##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6조제3호중 "내무국장"을 "보건환경국장"으로 한다

제6조제4호중 "국민운동지원과장"을 "환경관리과장"으로 한다

제9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중 별표 시설물사용료는 1996. 7. 1부터 적용한다.